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 Chapter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호)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포함
- 개인정보 예시



#### ▪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유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2011년 9월 30일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장)

- ▶ **안전조치 의무**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방침 공개**
- ▶ **유출 시 조치 해야 할 사항**  
-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 권리 보장 및 구제 (5·6·7장)

-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
- ▶ **개인정보 분쟁조정**  
- 조정의 신청, 절차 등
- ▶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절차 등

#### ▪ 개인정보 용어

- 개인정보 :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 Chapter2.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 : 수집-이용-제공-관리-파기의 단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①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 항목
    - ③ 보유·이용 기간
    -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1.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2.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3.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 가능
  4.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내 제3자 제공(제17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다음에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1. 목적 외 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아래 사항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목적 공공 기관만 해당하는 내용
    1.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3.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5.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1.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은 가능

2.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반드시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마찬가지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개인정보 파기방법

파기방법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파기절차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파기시행시항을기록및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기시행후파기결과를확인



### Chapter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가능

2.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기간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 가능

5.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한 · 거절 가능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1.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요구 가능

2.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사실 통지 의무

3.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4.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 Chapter4.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

#### ▪ 개인정보의 노출

1.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 ②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한 경우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 시 조치사항



### 개인정보 노출

- ① 신속히 노출 페이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 ②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및  
로봇 배제 규칙 적용(외부검색엔진의 접근 차단)
- ③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 후 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 경로 차단(제3자 접근 여부 파악)
- ④ 재발방지를 위해 서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디렉토리 점검

### 개인정보 유출

- ①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5일 이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 "24시간 이내"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 ②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③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 "1건 이상"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유출신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 개념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성희롱 : 우리가 사용하는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함”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상의 불이익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고용상의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 2. 성희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사회 통념의 고려	사안별 결정	기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은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

### 3.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 4.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성희롱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남성중심적 직장문화와 남성의 약한 성평등 인식도 성희롱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5. 직장 내 성희롱 특징

-대처의 어려움 :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안 부족 : 기업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성희롱에 엄격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가능성 : 성희롱 발생 후 성희롱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강력하게 다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6.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안



## 7. 사업주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Chapter 1. 장애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1) 장애의 정의

- 장애 : 일차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오랜기간동안 일상생활 제약을 받는 상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 : 2019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총 261만 명,  
출현율은 전체 인구의 약 5%

### 2) 사회적 시선 변화

### 3) 장애의 원인

-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요인
- 신체적 장애는 주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요인에서 발생
- 2017년 기준 장애 원인은 선천적 원인 5.1%에 비해 88%의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

### 4) 장애의 유형



### 5)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유형별 에티켓

-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지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Chapter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1)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인권은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 (장애인 인권 헌장)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인권법 (2008년 4월 최초 입법)
- 목적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3) 장애인차별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차별유형	내용
1. 직접차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광고를 통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5.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1~4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행위

#### 4)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고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

- 모집·채용 : 정보제공, 장소제공
- 채용 후 : 사업장 접근성,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 접근 가능한 교육장소, 특성을 고려한 난이도 및 평가시간과 평가방식 운영, 재활·기능평가·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 5) 고용상 차별 고충처리 절차

-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조정)->위원회의결(권고, 기각, 각하 등)->당사자통보

##### 1. 인권상담

- 방문상담 :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1
- 직접 방문

##### 2. 진정접수

- 진정접수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 3. 사건조사(조정)

- 담당조사관이 주사 진행
- 조사기간에 적정선에서 조정이 가능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소위원회 심의의결과정 거침

##### 4. 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등)

- 위원회 : 진정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 등 결정

##### 5. 당사자 통보

-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 -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 절차

    30명 이상의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필수 선임

-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
-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 조치 및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 Chapter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1) 장애인의 고용

- 일을 하는 이유 : 생존수단, 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기 실현과 자아발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 기업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 기업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으로 이익창출 극대화

###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1조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 (2000년에 개정)

### 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체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민간 사업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민간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3.1%, 그 외에는 3.4% 의무적으로 고용, 장애 고용을 꾸준히 상승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4) 사업주지원제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려고 도입된 지원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지원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용자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 장애인 고용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단의 각종 사업을 연계, 관리,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30% 이상 (일정 비율 이상 고용)
  - 표준사업장 인정 최대 10억 원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 감면 혜택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혜택
- 편한 일터 만들기

### 5) 장애인 지원제도

-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중증장애인 인턴제
  - 취업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제약을 보완

#### Chapter4.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

- 사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례 2. 주식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 사례 3. 주식회사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 사례 4. 행복모아
- 사례 5. 나눔누리
- 사례 6. 부평힘찬병원
- 사례 7. 이랜드

# 직장내괴롭힘 방지 교육

## Chapter1.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1. 반드시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세요
3.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4.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를 운영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 ▪ 직장내 괴롭힘 방지한 경우

#### 1. 법적분쟁 비용 발생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분쟁 비용 발생

#### 2. 손해비용 발생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음

#### 3. 생산성 하락

이직이 늘어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생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4. 기업 이미지 손실

사건 발생 사업장으로 주목받을 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 사용자의 역할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음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 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요

\* **근로자** :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

####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3. 행위장소

외근출장시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 Chapter2.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
  -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 집단 따돌림, 의도적무시·배제
  - 사적용무 지시
  -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감시

## Chapter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장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규정
  - 접근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 피해자 중심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조사된 행위가 사업장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
  - 처리절차 :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도 좋음
  -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 담당기구 구성 :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정함
  - 공정성 확보 :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와 조사자는 가급적 구분
  - 정식조사 : 공정성, 전문성 등을 위해 정식조사는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 고려 가능
- 사건 처리원칙
- 1. 사건 접수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
  -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 사건 접수 가능
  -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

- 예방대응업무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신고
- 온라인 신고센터
- 이메일

## 2. 상담

- 상담단계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 사건 처리방향 결정
-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 유지됨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 의무가 있음을 고지
-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도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마련
- 상담 순서는 신고자에 따라 달라짐
- 상담과정시 확인사항
  -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 피해자 상담시 지켜야할 사항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어 파악
  -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제도, 사내 제도·절차 정보를 제공
  -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 종결

## 3. 약식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면 약식조사로 피해 사실을 확인
- 약식조사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 약식조사는 행위자·피해자간 합의를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
-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만 조사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
- 조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약식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야할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 요소)
  - 사건 경위(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
  -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사항

## 4. 정식조사

- 조사방향·범위·대상 :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결정하여 조사 착수
-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사전에 주지되어 있어야 함
-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자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
-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역량 확보 :  
당사자와 직원들 사이에 조사과정 및 처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감을 형성

- 사건조사와 처리 :
  - 인사·법무·감사팀등에서 수행하나, 조사자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들 경우
  - 위원회나 외부전문가 통해 처리(사안에 따라 노조대표, 노사협의회위원 참여 가능)
- 비밀 유지 :
  - 조사자(위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 (피조사자도 서약서를 작성, 조사 시작 전 조사자(위원)가 비밀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
- 피해자 조치 :
  -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 휴가를 부여(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음)
- 정식조사시 진행되는 대면조사
  - 정식조사 후 보고서 작성

## 5. 사실 확인 및 조치

1.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2.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3. **정식조사**를 한 경우

## 6.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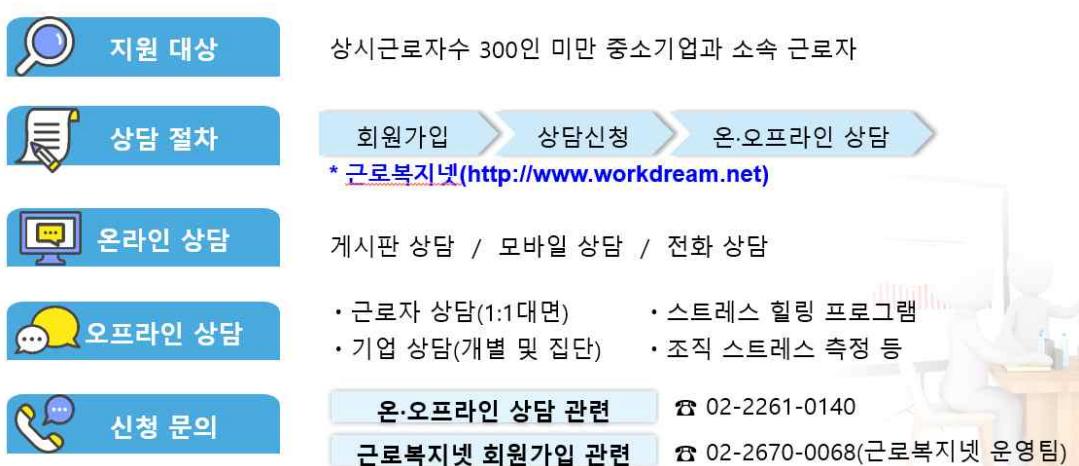
-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행위자의 괴롭힘 재발·보복등의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
- 사건 종결 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회사의 조치를 교육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유사 사안을 방지

## Chapter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EAP 서비스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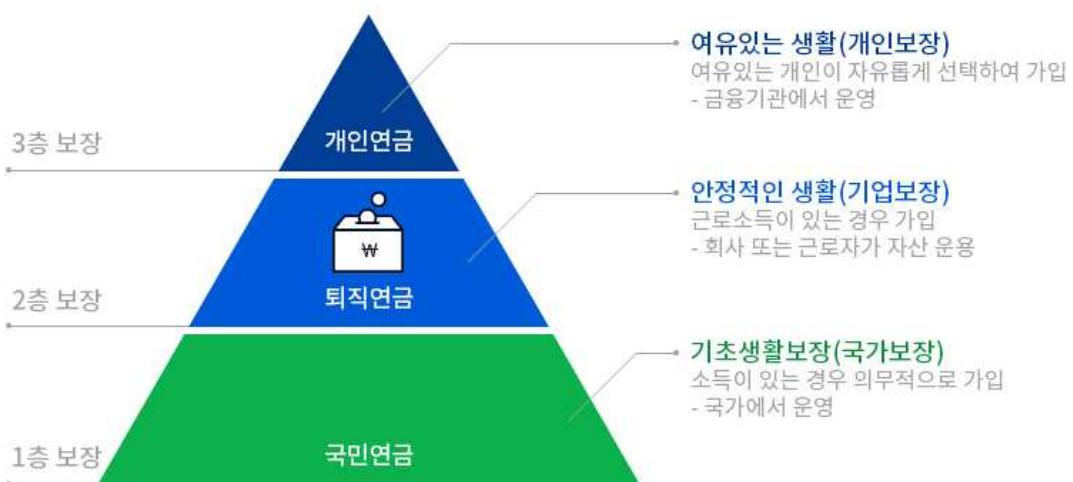


# 퇴직연금 제도

## Chapter 1.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이해

### 1. 퇴직연금의 필요성

1. 평균수명 82.7세 은퇴후 노후기간 길어짐
2. 노후생활 재워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 강조
3.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기간 6.1년 그러나 늘어나지 않는 노후자금
4.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



###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3. 퇴직금 VS 퇴직연금

1. 퇴직급여는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
2.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림
3.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
4.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

## Chapter2. 퇴직연금제도 유형

### 1.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시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 2.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개념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직장이동 및 조기 퇴직 시 별도의 개인 구좌를 만들어 운용
운용책임	회사	개별근로자	계약자
부담금 납입대상	회사	회사/근로자	회사/근로자
퇴직급여수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기간 (퇴직금 제도와 동일)	연간 임금총액 X 1/12 ± 운용손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개인추가납입	불가	가능 <sup>주)</sup>	가능 <sup>주)</sup>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사유충족시)
담보대출		가능(법정사유충족시)	

## Chapter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용하므로, 사용자도 근로자도 금융 및 투자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1. 실시의무자

### (1) 사용자

DB·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나, 가입자 교육을 실시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 퇴직연금사업자

DB·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나, 가입자 교육을 실시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 내용 및 방법

###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DB·DC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함.

### (2) DB제도에 관한 교육

DB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3) DC제도에 관한 교육

DC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4) IRP제도에 관한 교육

IRP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3. 미실시 시 제재조치

#### (1) 사용자에 대한 조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그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처리

####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조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Chapter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합니다.

### 2. 운영사업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 3.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퇴직연금 규약신고서작성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Chapter5. 주요 Q&A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의 기준 : 만 18세 미만을 뜻함(고등학생도 포함)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자가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

#### ①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②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

#### ③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④ 방임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

제17조 금지행위	제71조 벌칙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1의2호)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2호)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2조)	

#### \* 처벌법상 처벌 규정

내용	처벌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1항)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학대증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해당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2항
- 해당 직군 :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당
- 신고의무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처벌법 제 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3)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포용 국가 아동 정책 발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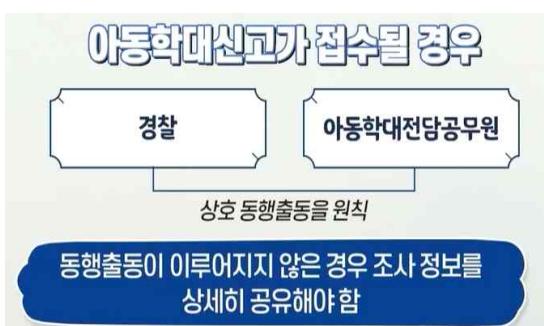
#### 아동학대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법적토대 마련

#### (4) 아동학대 대응체계 역할



- 신고된 현장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
- 현장 조사 이행력 강화 : 불응·방해한 과태료 상향 조정(5백만원->1천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에서 심층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례관리 강화  
->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 방지**

#### (5)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 위기 아동 조기발견 노력

##### 1) 학교

- 예비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 점검 및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 실시
-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 가정방문 실시

##### 2) 지자체

- 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점검
-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점검
-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점검
- 어린이집, 유치원 출결 점검

## 2.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 (1) 아동학대 유형

#### 1)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손, 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포함

####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체학대가 중상해나 살해·치사에 이르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5조

- \* 아동학대 의심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 수 있음

## 2)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의 예시			정서학대의 예시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빼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정서적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음

## 3) 성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추행하는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2

- 성 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음

## 4) 방임,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방임 가장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알 수 있음

#### 4.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1)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 \* 신고시 알릴 정보

- ①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② 아동학대 의심사항
- ③ 피해아동 인적사항
- ④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사항
- ⑤ 신고자 관련사항
- ⑥ 아동학대 발생여부
  - 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 아동학대 발생빈도
  - 아동학대의 지속성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⑦ 기타사항
  -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아동)
  - 학대행위 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 타 기관과의 연계여부

###### \* 신고자는 최대한 알고 있는 많은 정보 제공

- \* 신고 방법 : 경찰(112),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아이지킴콜 어플리케이션  
의명신고 가능(문자로도 가능)

##### (2) 아동학대 신고시 주의사항

- 가능하면 증거사진 확보하기
-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 진술 오염 방지 위해 학대상황 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
-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3)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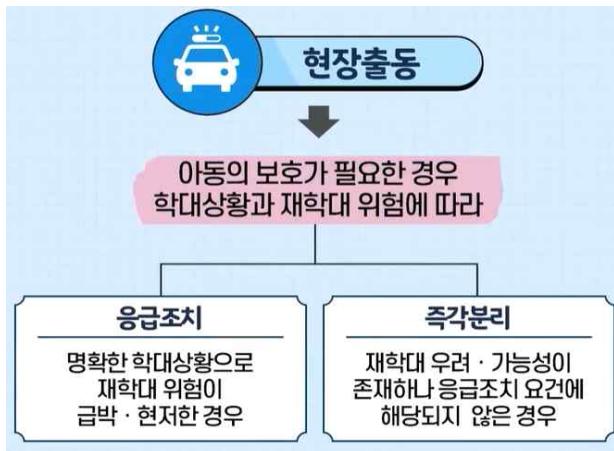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기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파악하기
- 아동의 분위기 변화 파악하기
- 아동의 말 경청하기&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하기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 (4) 신고 이후 협조사항

- 조사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적극 협조를 유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유지 필요

##### (5) 피해아동 보호절차

① 현장출동



- ② 아동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증거 수집
- ③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 ④ 아동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후 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분리보호 등 적절한 조치  
학대가 심할 경우 고소, 고발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
- ⑤ 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
  -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프로그램 시행
- ⑥ 학대행위자 재학대 방지
  -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례점검을 시행하여 종결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종결을 하게 됨
-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의 안전점검&상담교육 실시, 심리검사 심리치료 지원
  - 병원진료와 입원 등 의료적 자원 연계&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6) 신고자 보호

- ① 신고자의 신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62조의 2에 의해 보장
-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보도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③ 신고자를 신고 이유로 파면, 해임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④ 신고자를 신고 이유로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등 불이익을 준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⑤ 신고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
- ⑥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5.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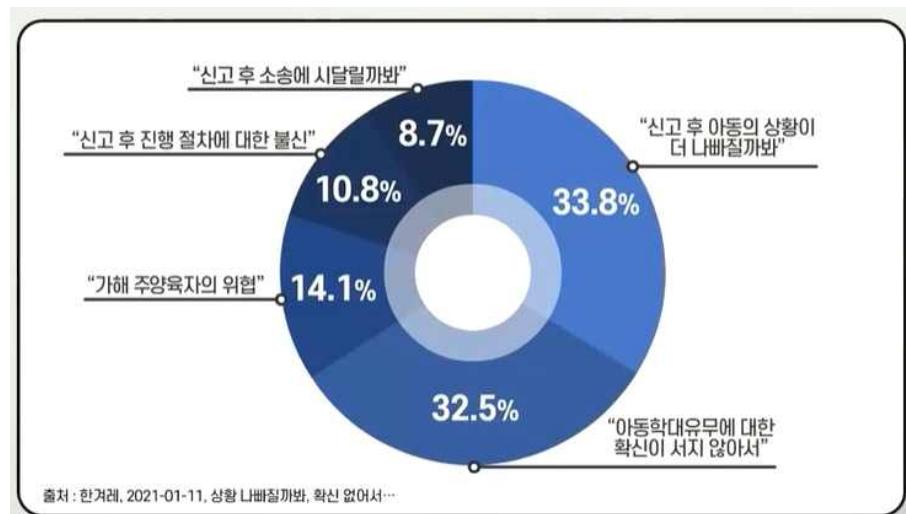
### (2) 아동학대 현황



### (3) 아동학대 발생장소

가정이 약 87%를 차지

### (4) 아동학대 신고무자가 신고 망설인 이유



### (5)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 1) 노인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 2)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 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 판정 이후 일반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20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증가(16,071건 → 16,973건) 하였음

#### ▪ 노인학대 행위자

2018년 총 5,665명의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을 친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들(37.2%), 배우자(27.5%), 딸(7.7%), 며느리(2.5%), 손자녀(2.4%) 순이었습니다.

#### ▪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묵인되고 은폐되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 ▪ 신고자 유형

##### ①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②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 행위자 본인, 학대 피해 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 노인학대 발생 장소

##### ①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②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

**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③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④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⑤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2. 노인학대 유형 알아보기

###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예측징후

- 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②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③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④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⑤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⑥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예측징후

- ①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②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③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④ 홍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⑤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⑥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⑦ 말하기를 꺼리거나 주저함
- ⑧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⑨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⑩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예측징후

- ① 걸을 때 혹은 앓을 때의 어려움
- ② 속옷이 찢어짐
- ③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④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⑤ 성병에 걸림
- ⑥ 분노 또는 수치심
- ⑦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예측징후

- ①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②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③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④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 ⑥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⑦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⑧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⑨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⑩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 방임 포함)

#### - 예측징후

- ①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②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③ 노인의 건강주변 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④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⑤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⑥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⑦ 노인 스스로 의료적 처치, 의식주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함(자기방임)

##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예측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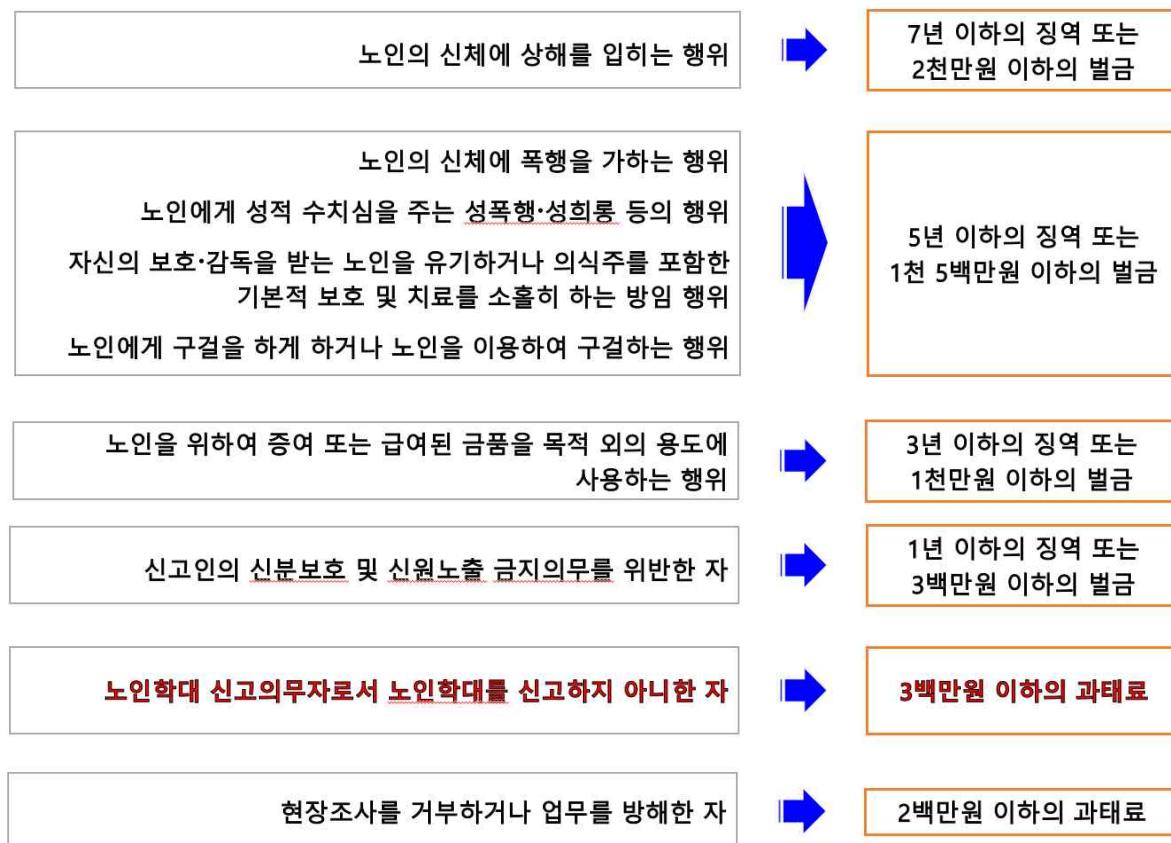
- ①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②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③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④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후 연락두절

## 3.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신고 방법

### 1)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2)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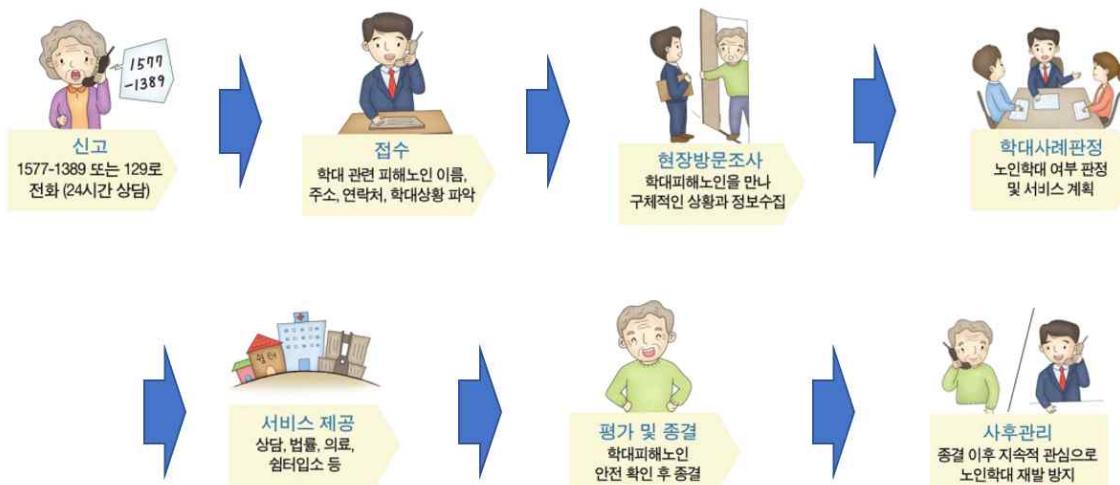
### -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 -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4)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



##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

###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 ▪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의뢰합니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1. 긴급복지지원제도

###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배경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으로 위기사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적

### 3)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 판단하여 접수 후 3일 (72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 추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 : 1개월, 의료·교육지원 : 1개월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연장 가능)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통해 추가 가능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 : 3개월,

의료·교육지원 :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 9개월

- 지원 종료후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지원 불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가 있더라도 지원종료 3개월 이내에 지원 불가능

-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에 연계

이런 경우 타법률에 의한 지원결정 전 → 우선적 긴급지원 가능

### 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 지원의 종류

- ① 직접지원 : 금전 또는 현물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 ② 연계지원 : 민간기관 연계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지원하거나 상담·정보제공

##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위기사유 (위기상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 기준별로 기준이 다르다.  
8인가구일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55,191원 씩 증가
- 재산 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241백만원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이하, 농어촌 13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예외(주거지원) 800만원이하.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1) 보건복지, 시·군·구, 시·도, 민간협력 단체의 역할

#### ① 보건복지부

- 담당업무 : - 긴급지원 정책 개발
- 사업 지침 마련
  - 교육 및 홍보
  - 사업 모니터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지원요청이나 신고 받으면 해당 시·군·구에 연계, 처리과정과 지원현황 정보를 상담센터에 통보

②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추적인 역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하고 지원요청 신고접수하여 현장확인 및 긴급지원, 사후조사 실시. 추가적으로 지원 연장 결정(2개월 이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의결 : 재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

③ 시도 역할 : 긴급지원기관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지원 기관 조정 요청시 예산확보 현황

- 긴급지원사업 실적 확인하여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여부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긴급지원대상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기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토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④ 민간협력체계의 역할 : 의사, 의료기관 종사,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조기발굴)하여 민간자원 연계 역할 -> 실질적으로 중요함

#### 4. 긴급복지지원 종류

1. 주지원 :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부가지원 :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방법 및 절차

\* 금전지원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예외적 현물 지원 가능

-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때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② 지원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로 지급

### ③ 지원기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 : 1개월 선지원

연장지원 : 2개월 이내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위기상황의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3개월의 범에서 추가지원 가능

## 2)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

### ① 주거지원 금액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1~2인	3~4인	5~6인

### ② 지원기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 : 1개월 선지원

연장지원 : 2개월 이내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위기상황의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9개월의 범에서 추가지원 가능

## 3)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지원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③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 ① 의료지원 대상일 경우

- 의료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
- 동일 상병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
-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 상이한 상병일 경우
-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 ② 지원내용

의료서비스와 약제비 지원

의료지원은 퇴원 전 신청 원칙

입원 당시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퇴원후 신청이 가능

### ③ 순서

긴급지원 대상자 의료지원 신청→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소요된 비용 지급

### ④ 의료지원의 5단계 지원절차

1. 의료지원 요청
2.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
3. 의료기관에서 진료, 처방약물 조제등 의료서비스 제공
4. 소용된 비용을 시·군·구에 청구
5.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 등에 비용지급  
건강보험 지원 청구할 경우 G코드 입력 안내

### 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선별 급여의 형태로 지원 가능(감염 및 전염 사유 예외)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 지원 종료**
- **불가파하게 의료기관 변경 시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지원 가능**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 ×**
- **시보험가입자의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4) 긴급복지지원의 다른 지원들

###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시설 이용실비
-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 시설이용 1개월 지원가능하나 최대 6개월 연장지원 가능

### ② 기타지원

-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 ③ 교육지원

- 교육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자녀 있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지원

## 5.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 1)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내용

#### ①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사업 우선 연계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나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가능

#### ② 지원내용

-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에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급여화된 상급병실 이용시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감염 및 전염사유는 예외
- 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및 식대, 보호자 식대

#### ③ 긴급의료비지원 절차



### 2)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내용

#### ① 지원대상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 지원
- 임시거주지 마련, 사후관리

## 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위기가구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 예방하고자 함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장애와 인권

### 1) 장애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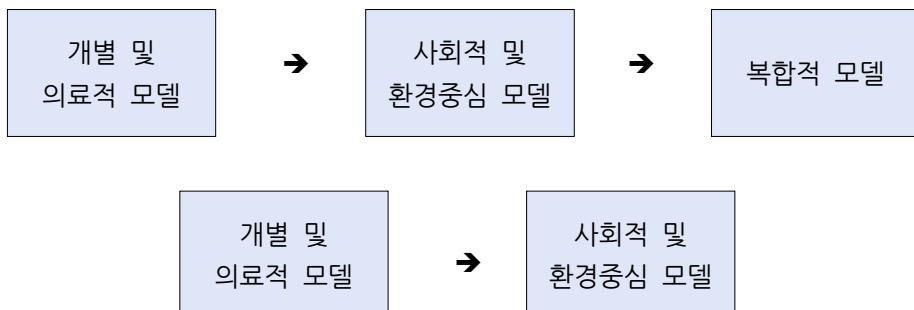
-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 장애유형과 구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지체장애	신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장루·요루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 2) 장애란?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

- 장애개념의 세계적 추세



### 3) UN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12월 13일 제 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2008년 12월 국회비준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부칙 '선택의정서')
-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있도록 보장하고 천부적 존엄에 대한 존중의 증진

### 4)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년 제정)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및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성(性) 등,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금지(장애인 학대에 해당),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등 차별금지

## 2.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 가혹행위

#### ① 신체적 학대 대표행위

-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 등)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가혹행위(잠을 재우지 않기, 굶기기, 고문 등)
- 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
- 체벌, 기합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① 정서적 학대 대표행위

-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 종교적 행위의 강요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① 성적 학대 대표행위

- 성추행, 성폭행
-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 성희롱·성폭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 경제적 학대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 ① 경제적 학대 대표행위

- 노동력착취
-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자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① 유기·방임 대표행위

- 피해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기복적인 교육·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 유기 또는 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장애인 학대 현황

### ○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단 건수



#### **4. 사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

- 1) 신체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피해장애인의 몸에 납득되지 않는 상처나 부상이 있는 경우
  - 체벌이나 구속, 결박의 흔적
  - 오래된 상처가 낫기전에 생긴 새로운 상처의 흔적
  - 특정장소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포
- 2) 정서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 대한 회피, 거부, 지나친 긴장
  -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자살충동
  - 과도하게 순응적인 태도, 낮은 자존감
  -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 3) 성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성적학대를 나타내는 신체적 흔적
  -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피가 묻은 옷
  - 성적 행동의 변화, 성적 행위의 반복적 표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과 행동
- 4) 경제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음
  - 경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미납된 청구서
  -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 금융거래, 대출내역
- 5) 유기·방임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
  - 저체중, 전신쇠약,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 부적절한 거주환경
  - 본인의 신체, 의복, 주거공간의 위생상태 불량
  - 보호의무자와 연락단절(유기), 보호의무자의 치료 및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표시(방임)

#### **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1) 법적근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11)  
학대피해장애인의 발견 및 피해회복지원, 장애인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
- 장애인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장애인학대신고체계 구축운영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2)  
사례종결 후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장애인학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원

##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학대신고의무 부여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자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장애인학대신고의무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3) 장애인학대신고 인지와 대응

- 인지 :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함
  - 대응 : 장애인학대 인지 후 신속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 장애인학대신고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연락,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피해자 관련 정보

-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관련 정보

- 학대의 구체적 내용
- 일시, 장소, 학대행위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 여부 등

4)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파면, 해임, 해고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제1호)

-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